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버스정착시민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“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으로 하고”를 “위원장은 행정(2)부시장으로 하고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</p> <p>제9조제1항중 “운수행정계장”을 “운수행정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 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등록)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p> <p>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3조의2(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) ① 의장은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2개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</p>	<p>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,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.</p> 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</p> <p>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</p> <p>제6조의 제목 “(의장·부의장 선거방법)”을 “(의장·부의장의 선거방법)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의 제목 “(의장·부의장 임기)”를 “(의장·부의장의 임기)”로 한다.</p> <p>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0조의2(의장·부의장의 겸직제한)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1조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대표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16조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대표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4조(의제의 발언의 금지)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3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37조제3항중 “의장이 정한다.”를 “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”로 한다.</p> <p>제49조제1항 단서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”를 “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1조(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)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53조제1항중 “문화교육위원회”를 “문교보사</p>
--	---